#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8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윤재갑·조경태·문진석

박상혁 • 이개호 • 김승남

이동주 • 민형배 • 민홍철

남인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맹견 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 "사람에게 신체적"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로 한다.

제13조의3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 ①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제46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5.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소유·사 육한 자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힌 소유자등 제47조제1항제2호의4 중 "사람에게 신체적"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의 소유 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맹견이 <u>사람에게 신</u>	3 <u>사람이나 반</u>
<u>체적</u>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u>려동물에</u>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u>&lt;신 설&gt;</u>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u>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u>
<u>&lt;신 설&gt;</u>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u>4.</u> (생 략)	<u>7.</u> (현행 제4호와 같음)
<u>&lt;신 설&gt;</u>	<u>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u>

제4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4. (생 략) <신 설>
- 2. 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①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소유·사육한 자
- 2. 3. (현행과 같음)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힌 소유자등

## <u>1.</u> ~ <u>4.</u> (생 략)

- ④·⑤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3. (생략)
  -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u>사람에게 신체적</u> 피 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 지 아니한 소유자등
  - 2의5. ~ 5. (생략)
  - ② ~ ④ (생 략)

$2. \sim 5.$ (현행 제 $1$ 호부터 제 $4$	4
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_
	_
	_
<u>.</u>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_
사람이나 반려동물어	
	_
2의5.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